시·도회 규정

시·도회 규정

전면개정 2010.10.26.
전면개정 2016. 1.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회의 설치·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6. 29)

제2조(적용범위) 시·도회의 설치운영관리에 관하여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하게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4. 6. 29)

제3조(설치기준) 시·도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의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제4조(시·도회명칭) 시·도회의 명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구역 명칭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97. 12. 1)

제5조(시·도회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 ①서울특별시에 설치된 시·도회 사무소의 소재지는 해당 시·도회가 관할하는 지역 안에, 각 광역시 및 각 도에 설치된 시·도회의 사무소는 광역시청 또는 도청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97. 12. 1)
②시·도회는 운영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시·도회관할 분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4. 6. 29)
③삭제 〈2004. 6. 29〉

제6조(임무) ①시·도회는 협회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97. 6. 12, 2004. 6. 29)
②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회 관할 분회는 해당 시·도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보조업무조직으로서, 해당 시·도회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97. 12. 1)

제7조(시·도회소속구분) 삭제 〈'97. 6. 12〉

제8조(회원의 관리 및 시・도회 소속구분) 회원의 관리와 시・도회 소속구분은 회원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시・도회의 구분) 시・도회의 구분은 전년도말까지 회비를 납부한 회원(정상회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개정 2003. 1. 8, 2009. 12. 22. 2022. 6. 1)

1. 1급 시・도회 : 5,000명 이상 (개정 2009.12.22)
2. 2급 시・도회 : 3,000명 이상 5,000명 미만 (개정 2009.12.22)
3. 3급 시・도회 : 3,000명 미만 (개정 2009.12.22)

<단서삭제 2009.12.22>

제2장 운 영 위 원 회

제10조(운영위원 및 감사의 수) 시・도회에는 정관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회장 1인과 시・도부회장 1인을 포함한 다음의 운영위원과 감사 2인 이내를 둔다. (개정 2003. 1. 8, 개정 2024. 12. 19)

1. 1급 시・도회 : 15인이내
2. 2급 시・도회 : 11인이내
3. 3급 시・도회 : 9인이내

제11조(임기) ①시・도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4. 6. 29, 단서신설 2010.10.26, 개정 2016. 3. 10, 2023 3. 20)

②시・도부회장・감사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5, 2023. 3. 20)

③임기의 기산과 종료는 시・도회 정기총회에서 시・도회장 등으로 선출된 때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시・도회 정기총회에서 차기의 시・도회장 등을 선출하는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1. 2. 15, 2023. 3. 20)

④시・도회장 등의 결원이 생길 경우 그 보선은 다음 총회일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보선한 경우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시・도회장 등의 직무) ①시・도회장은 시・도회를 대표하며, 시・도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시・도회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2. 12. 26)

②시・도회장은 정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협의회(시・도회별 협의회를 포함한다)의 의장, 부의장 또는 위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19)

③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시・도회업무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

의・의결한다.(개정 2004. 6. 29)
④시・도회장, 시・도부회장, 운영위원은 협회의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항상 관내 회원의 모범이 되어야 함은 물론, 회원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감사는 해당 시・도회의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시・도회장 등 공석시 조치) ①시・도회장 등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시・도회 정기총회를 기한 내에 개최하지 못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시・도회장 등을 선출하지 못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기존 시・도회장 등의 임기는 후임 시・도회장 등의 선출 시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12. 26)
②시・도회장 및 감사의 사임 또는 자격상실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기 정기총회에서 선출토록 하며, 시·도회장이 차기 정기총회에서 새로 선출될 때까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0. 10. 26, 개정 2024. 12. 19)
1. 시・도부회장
2.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운영위원

제14조(자격상실 및 직무 정지등) ①정관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 및 선임된 직위에 있는 자가 회원의 자격상실 또는 회원관리규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된 날로부터 그 직에서 해임된다.
②운영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한 때
2. 협회의 제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회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기타 현저한 부정행위가 있을 때
4.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5조(수당 및 여비) 시・도회장 등이 회의 및 행사 등에 참가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 12. 1)

제 3 장 회 의

제16조(회의) ①시・도회에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회의의 구성) ①시・도회총회는 시・도회에 소속된 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년도 말까지 회비미납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와 전년도 7월 1일 이후 신규가입 회원(제명 후 복권·재가입 제외)은 당해연도 정기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개정 1997. 6. 12, 개정 2017. 1. 1, 개정 2024. 12. 19)
②운영위원회는 시・도회장, 시・도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개정 2004. 6. 29)
③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신설 2010.10.26)

제18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시・도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1월을 초과할 수 있다.
③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시・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요구할 때
4.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연서로써 요구할 때
④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⑤총회의 소집은 소집일 5일전에 일시, 장소 및 의안을 명시하여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개정 2012.12.26)
⑥시・도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의안을 총회 소집일 10일 이전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 방법) ①총회는 재적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실제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다만, 표결에 붙인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표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권을 갖는다.(개정 '97. 12. 23)
②회원관리규정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회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회원이 총회에 출석치 못하여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한 경우에는 성원을 위한 출석으로 간주하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4. 6. 29)

1. 시・도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
2. 시・도회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도회장 등의 선출에 관한 사항(개정 2010.10.26)
4.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회장 또는 시・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다만, 의안표결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시・도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이 경우 시・도회장이 표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단서신설 2004. 6. 29)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도회장이 소집한다.

1. 시・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제22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도회총회에 제안할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시・도부회장 선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포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회의록 작성)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사무국장은 간사의 업무를 담당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회원 또는 운영위원 2인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7. 6. 12)

제24조(분과위원회) ①시・도회는 필요에 따라 안전관리 및 중재업무 등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97. 12. 1)

②분과위원회 위원은 시・도회장이 위촉한다.(개정 '97. 12. 1)

③분과위원회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개정 '97. 12. 1)

④분과위원회는 시・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시・도회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개정 '97. 12. 1)

제24조의2(협의회) ①시·도회는 정관 제30조의2에 따라 업역·전문분야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17. 6. 9)

② 제1항의 협의회는 회원의 자율기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도회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및협의회설치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중앙회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7. 6. 9)

제 4 장 사 무 기 구

제28조(사무기구) 삭제 〈'97. 12. 1〉

제29조(업무) 삭제 〈'97. 12. 1〉

제 5 장 사업과 회계

제25조(예산편성) ① 시·도회의 예산편성은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기초로 하여 수입 대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여 수립한다.

② 시·도회예산은 중앙회지원금과 시·도회 자체 수입금으로 편성한다.

③ 시·도회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사업과 재원) ①시·도회는 중앙회가 정한 사업 이외에 관내 회원의 권익신장과 품위유지 및 친목도모를 위한 자체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시·도회는 매년 10월말까지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 12. 23)

③삭제 〈'97. 6. 12〉

제27조(운영비) 시·도회의 직무활동비, 일반관리비 및 기타비용 등은 중앙회 사업예산에서 지급한다. (개정 '97. 12. 1)

제28조(송금) ①중앙회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수입금 전액은 사업 단위별로 송금한다. (신설 '97. 6. 12)

②수납 회비의 송금 및 수납 현황 보고는 회비규정 제10조에 따른다.(신설 '97. 6. 12, 개정 '12.12.26)

제29조(회계) 시·도회의 사업과 예산, 결산, 회계 등의 회계처리는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직원교육 및 보고 (신설 '97. 6. 12)

제30조(직원 교육) ①신규 채용한 시·도회 직원은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필하여야 한다.

②시·도회 직원의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승인 및 보고) ①시·도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관한 사항
3. 기타 협회에 관련된 회무 중 중요한 사항

②시·도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도회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회의록 첨부 2주내)
2. 사업계획 실적보고 (회계년도 종료 후 30일 이내) (개정 2022. 6. 1)
3. 지방 관서나 유관기관에 대한 건의 및 답신사항(2주내)
4. 회계 규정에 의거 작성한 결산서 및 제 보고 (회계년도 종료후 30일 이내)
5. 매월말 회비 납부자 명단
6. 제 규정이 정한 정기적 보고
7. 회장이 지시한 사항의 처리결과
8. 기타 중요 또는 긴급 사항

제 7 장 지 도 감 독

제32조(지도감독) ①시·도회는 정관과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회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시·도회는 시·도회가 수행하는 제반업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감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감사를 받는다.

③회장은 시·도회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감독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협회의 설립목적과 정관 및 협회 규정을 위반하여 협회 조직질서의 혼란과 품위를 실추케 하거나 집단행동을 주도한 때
2. 중앙회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회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정관과 규정으로 정하는 승인 또는 보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때

4. 회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기타 현저한 부정행위가 있을 때

④회장은 시·도회장 등과 선출 또는 선임된 시·도회장 등과 시·도부회장 및 대의원이 정관과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선출 또는 선임된 때에는 해당 시·도회의 총회 또는 시·도회장에 대하여 재선출케 하거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회 총회와 시·도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0.26, 2016. 1. 1.)

제39조(보고) 삭제 〈'97. 6. 12〉

제 8 장 시·도회장 회의 〈삭제 '97. 12. 1〉

제40조(구성) 삭제

제41조(성격) 삭제

제42조(구성원) 삭제

제43조(간사) 삭제

제44조(소집) 삭제

제45조(내용) 삭제

제46조(회의록) 삭제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정관부칙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대한전기기사협회(이하 "기사협회"라 한다)로부터 승계된 지부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지부장·부지부장·운영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1997년도 정기총회에서 차기의 지부장·부지부장·운영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③(규정 시행유보) ①지부장·운영위원에 입후보하는 자에 대하여 후보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선출 하는 지부장·운영위원에 한해 후보등록 절차를 유보한다.

②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개최되는 지부정기총회 전일까지 회원으로 가입하였거나 미납된 회비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 제22조제2항 및 회비규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도 지부정기총회에 한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종전의 선거관리규정은 시행을 유보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지부감사 선출의 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지부총회에서 선출된 감사는 '99년도 본부총회에서의 정관 개정 승인과 동시에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2000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명칭의 변경)** 2002년 2월 22일 정관의 개정시 일부명칭의 변경에 의거 이 규정 중 규정의 명칭, 본문, 별표 및 별지서식의 '지부'를 '지회'로, '지부장'을 '지회장'으로, '부지부장'을 '부지회장'으로 하고, 직제규정에 의거 '본부'를 '중앙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시·도회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선임된 지회장, 부지회장은 이 규정에 의한 시·도회장, 시·도부회장으로 본다.

③**(시·도회장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단서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시·도회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2012년 개최되는 시·도회총회에서 선출되는 시·도회장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제12조의2제3항은 정관 시행일(201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단서규정은 2015년 시·도회 총회에서 새로이 선출된 시·도회장(2012년도 선출되어 2015년도에 연임한 시·도회장 제외)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정관개정 승인을 받은 날(2023. 3. 20)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 용) 부칙 제1조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19대(2021년, 2022년 보선포함)에 선출된 자부터 적용하되, 제18대(2018년)에 이어 연임한 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개정 '98. 5. 8, '06. 1. 1, '10.10.26, '12. 8. 1, '17. 3. 1, '23. 9. 19.)

각 시·도회 명칭 및 관할 구역

시·도회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서울특별시	동시회	서울북동지역	서울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성동구, 광진구
	서시회	서울남서지역	서울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남시회	서울남동지역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북시회	서울북서지역	서울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
부산광역시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전 지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광주광역시 전남도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 지역
울산광역시회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지역
경기도회		경기안양시	경기 부천시, 안양시, 광명시, 의왕시, 김포시, 광주시, 안산시, 시흥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군포시, 양평군
경기남도회		경기 수원특례시	경기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 여주시
경기북도회		경기의정부시	경기 구리시, 의정부시, 고양특례시, 동두천시, 양주시, 남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파주시, 가평군
강원특별자치도회		강원 강릉시	강원특별차치도 전 지역
충청남도회		충남 천안시	충청남도 전 지역
충청북도회		충북 청주시	충청북도 전 지역
전북특별자치도회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 지역
경상남도회		경남 창원시	경상남도 전 지역
경상북도 동도회		경북 포항시	경북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울진군, 영양군, 영덕군, 청송군, 울릉군, 고령군, 청도군
경상북도 서도회		경북 구미시	경북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영주시, 안동시, 상주시, 성주군, 칠곡군, 의성군, 예천군, 봉화군
제주특별자치도회		제 주 시	제주도 전 지역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1.12.27, 2014. 7. 1)

시・도회 총회 위임장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　　.　　.

본인은　　시・도회　　년도(제　　회)[정기, 임시] 총회에 개인의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여 시・도회규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총회의 성원을 위하여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성　　명 :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시・도회 총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0.10.26, 2011.12.27) <삭제 2013. 3. 8>